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3-13

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

판 결

사 건	2016가단12351 가등기말소
원 고	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
피 고	A
변 론 종 결	무변론
판 결 선 고	2017. 1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4. 12. 6. 접수 제250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2 청구원인과 같다.
2. 적용법조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3-13

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이효제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3-13

별지1

부동산의 표시

1. 경상남도 창녕군 [redacted] 대 136㎡
2. 경상남도 창녕군 [redacted], [redacted]

[도로명주소] 경상남도 창녕군 [redacted]

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

1층 근린생활시설 79.98㎡

2층 근린생활시설 79.98㎡

3층 주택 79.98㎡

옥탑 33.64 79.98㎡

지하 근린생활시설 79.98㎡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3-13

별지2

청 구 원 인

1. **원고와 소외 B 의 지위.**

원고는 시설·자동차 등의 재산권의 시설대여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, 소외 B 은 원고와 금융리스약정을 체결한 리스계약자입니다.

2. **피보전권리(해지금)의 발생.**

원고는 소외 B 을 상대로 2016. 06. 30. 자로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 17932 집행력있는 판결에 기하여 금64,950,499원 및 이중 원금 32,118,96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

3. **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가등기말소청구.**

가. 소외 B 과 피고 A 사이의 매매예약.

소외 B 은 피고 A 과 2004. 12. 04.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4. 12. 06.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접수 제2504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.

나.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.

위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내에,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 할 것입니다.
(대법원 2003. 01. 10. 선고 2000다 26425 판결 참조)

다.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.

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통상의 민사채권에 포함되어 이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, 10년간의 권리행사가 없었으므로 이는 소멸시효 완성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할 수 있으므로 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.
(민법 제162조 1항 참조)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3-13

라. 담보가등기일 경우 소멸시효 완성.

만일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하더라고 채무자등이 위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변제를 조건으로 담보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더라도 이를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등의 위 말소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확정적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입니다.

(대법원 2014. 08. 20. 선고 2012다47074 판결 참조)

마.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가등기말소청구.

그러나 소외 B 은 고의적으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시키는 적극적인 재산권행사를 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의 채권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소외 B 을 대위하여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4. 맺음말.

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소멸시효가 모두 경과하였으나 소외 B 은 고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말소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재산권행사를 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소외 B 을 대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건 소에 이르렀습니다.